

#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74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04월 25일  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안 제3조 책무 중 시장에게 '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'로 규정한 것은 「지방자치법」에서 정하는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수정하는 한편,
- 자율소방대의 예산 지원 대상 중 안 제7조제1항제3호의 '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·물품'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필요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바,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보완·수정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내용을 수정함.(안 제3조)
- 나. 자율소방대 지원 범위를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·물품으로 명확히 함.(안 제7조제1항제3호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 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3조 중 “예산을 지원하기”를 “이를 지원하기”로 한다.

안 제7조제1항제3호 중 “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·물품”을 “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·물품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전통시장등의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<u>예산을 지원하기</u>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책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를 지원하기</u> ----- -----.</p>
<p>제7조(자율소방대 지원) 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, 안전점검 및 홍보</li> <li>2.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</li> <li>3. <u>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·물품</u></li> <li>4. 그 밖에 시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자율소방대 지원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제정안과 같음)</li> <li>2. (제정안과 같음)</li> <li>3. <u>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·물품</u></li> <li>4. (제정안과 같음)</li> </ol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전통시장"이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.
2. "상점가"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.
3. "골목형상점가"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.
4. "자율소방대"란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(이하 "전통시장등"이라 한다)에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·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전통시장등의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자율소방대 구성 및 임무) 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을 두며, 대원은 해당 전통시장등의 규모, 점포 및 상인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

2. 주변 소방통로 확보

3. 화기취급 감시

4.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

5.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거나 자율소방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③ 자율소방대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자율소방대 운영) ① 자율소방대장은 정기적으로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자율소방대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) 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관할 소방서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및 자율소

방대 그리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7조(자율소방대 지원) 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, 안전점검 및 홍보
2.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
3.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·물품
4. 그 밖에 시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자율소방대에 지원을 한 경우 필요한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제9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은 자율소방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1. 자율소방대의 등록
2. 자율소방대의 교육·훈련
3. 자율소방대의 지원 및 지도·감독
4. 그 밖에 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제10조(자율소방대 관리시스템)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표창)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및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